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0 - 17 (1호)
안전유형	심의

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(안)

2020. 10. 14.

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	2
1. 주요과제 현황 및 계획	2
2. 예산(안) 반영 현황	7
3. 입법 계획	9
III. 보완·추가 과제	10
IV. 추진 일정	13

I. 추진 배경

- 그간, 아동·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였으나,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
 - ※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(20. 6.),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(20. 6.)
- 이에, 아동·청소년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개선안인 「**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**」을 수립·발표

< 참고 :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」 주요 내용 >

정보공유·연계협력 강화	진권 제한보완
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현장 발굴 강화 ② 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 ③ 학대아동 빅데이터 분석 활용	① 징계권 조항 개정 ② 보호대상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 ③ 즉각 분리제도 도입
인프라의 과감한 개선	대응 단계별 상호성 제고
① 아동보호전문기관·보호시설 확대 ②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	① [예방]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등 ② [발굴] 신고제도 내실화 등 ③ [초기대응] 현장조사 이행력 강화 등 ④ [보호·지원] 지원 편차 완화 등 ⑤ [재발방지] 학대발생가정 사후관리 등

※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·발표(20.7.29.)

-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**인프라 마련·법령 개정** 등이 **수반**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한 **준비 기간**이 **소요**될 것으로 예상
 - ※ 또한, 아동학대 발견체계 강화에 따라 드러나는 아동학대는 당분간 많아질 것으로 예상
- 이에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 과제들의 **예산 확보** 및 **입법 현황**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**추진 상황**을 점검할 필요
 - ※ 동 대책 추진상황을 사회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기로 결정(제11차 사회회의)
- 또한, 최근 인천 초등생 화재사고 등 보호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**과제를 추가·보완**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 안전망 마련 추진
 - ※ (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) 보호자가 아동들을 지속 방임 이유로 신고 접수 이력 존재, 학교·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 이용 등도 거부(20. 9.)

- 1 -

II.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

1. 주요과제 현황 및 계획

◇ [정보공유]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, 학교 등 대응강화 기반 조성

[정상추진]

- (학 교) 교원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**학교용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** 개발 착수(7월~), 등교·원격수업 기간 중 **학생 상담·관찰 강화** 요청(8월)
 - * 예방·조기발견, 신고절차 외에 기관간 협력 포함(예: 취약 지원 및 비밀전하,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참여, 국가아동학대시스템 활용 및 신청 등) (12월 현장배포 예정)
- 지자체의 위기의심아동 방문조사가 어려울 경우 학교에 협조 요청하도록 매뉴얼 개정(9월) 및 학교에서도 협조하도록 안내(8월)

< 참고 : 학교에서의 대응 강화 >

[신고·후속지원] 학교에서의 대응 절차, 신고자 보호 등 마련 (매뉴얼 반영, ~12월)

- (신고독려)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교원의 **면밀한 관찰**을 강화하고 신고부담 완화
 - ①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**방임·정서 학대** 등에 대해서도 **모든 교원이 면밀히 관찰**하고 학대 의심이 발견되는 경우 **조속히 신고**할 수 있도록 **안내 강화**
 - ② 아동학대 신고 시 **학교(장) 명의의 신고**를 통해 교원 신고부담 완화
- (조사협조) 지자체의 위기의심아동 방문조사가 어려울 경우 **학교와의 협력**을 통해 아동의 평소 생활, 특이사항 등 파악
- (후속상담) 아동보호전문기관의 **심리치료·상담**이 종료된 학생 중 지속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**위클래스·위센터** 등을 통한 후속 상담 실시
- (신고자보호)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**폭행·협박**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 대상으로 **심리상담·치료**(교원자지원센터) 등 지원

[교육·연수] 교원 등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 실시를 통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

- (교육과정 반영) 교원이 아동학대를 보다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**예비교원 양성 과정**부터 '**아동학대 예방**' 교육을 필수 이수 추진(「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」 개정, '21.3.-)
- (교원 연수) 아동학대 예방·신고의무 교육 관련 연수를 반영하도록 '**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**'에 포함하여 시·도교육청 및 연수원에 안내(~20.10.)

- 2 -

- (정보시스템 연계) 취약계층 아동(드림스타트 수혜자) 이사 시, 해당 전입지 시스템(행복e-음)에 자동알림·조회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추진(-12월)
- (예측시스템) 위기아동 예측시스템(e아동행복지원시스템) 개편 연구 착수(-11월), 방문조사 강화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역량교육** 실시(8~9월)
 - * 「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 개선방안」연구(사회보장정보원)
 - ** 충남·경남(8월), 강원·울산·광주·충북·세종(9월) 등 비대면 영상교육 실시

[신속추진 필요]

- (지역 협의체) 당초 8월부터 전국 시군구별로 지자체-경찰-교육청-아보전 간 정보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,
 - 지자체에서 보다 내실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수립·안내하여, 9월부터 각 시군구에서 협의체 구성 중*
 - * 관계기관 의견 조회(-8.24)를 거쳐 '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운영 방안'을 마련하고, 시도에 안내(-9월) → 시군구별 협의체 구성(9월-)
- ☞ 광역지자체 점검기구(광역아동보호전문기구)에서 각 시군구별 구성·1차 회의 추진 여부 등을 점검하고,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(-10월)하도록 하여 조속한 구성 추진

< (사례)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·운영(안) >

- (명칭)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
- (역할) 학대피해 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보호·지원 방안 추진
- (구성기관) 수원시 아동보호업무 담당과, 수원지역 3개 경찰서(중부, 남부, 서부), 수원교육지원청,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
- (기관별 역할) [수원시] 협의체 운영(주관), 위기아동 정보 공유, 보호·지원방안 가이드 제공 [경찰서] 수사 의뢰한 위기아동 소재·안전 확인, 결과 공유 등 [교육지원청] 지자체가 협조 요청한 아동에 대한 관찰상담 결과 공유 등 [아동보호전문기관]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이행상황 공유 등
- (주요 협의사항) 월 1회 회의 추진
 -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학대피해아동 정보 공유
 -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 위기의심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회서비스 현황 등 공유
 - 만3세 아동 전수조사 관련 사회서비스 연계 및 위기의심아동 발견시 협조 추진 등

◇ [인프라·친권 보호인프라 확충을 위한 준비, 친권제한 확대 기반 마련]

[정상추진]

- (보호인프라) 아동보호전문기관 '21년 신규설치 지역 선정(9월, 10개소) 및 적정규모 산출용역* 추진, 전문위탁가정 도입 개정안 마련(8월)
 - * 「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에 따른 규모 및 운영방안」 연구용역 추진(-'20.10)
- (학대조사업무 공공화) '20. 10월부터 시행하는 조사 공공화 대비 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24시간 대응체계 마련
 - (인력 배치) '20년은 10월 1일 기준 98개 시군구(178명) 배치 완료, 연내 총 118개 시군구(총 290명)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예정
 - (전문성 강화) 전담공무원의 학대판단·보호 조치를 조력하는 업무 매뉴얼 마련 완료(-9월)·교육 실시(9~11월), 24시간 대응지침 마련·안내(8월)
 - * 전담공무원 대상 이론 및 실습 교육 실시, 핵심내용 위주의 보충교육 추가 실시
 - ** 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인원 수에 따른 아보전과의 야간 공동 당직 수행 등
- (친권제한)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 및 즉각 분리 기반 마련
 - (징계권) 민법 제915조(징계권) 삭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10.13.)
 - (즉각분리제도) 법령 개정 전이라도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, 아동을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확정·배포(9월)
 - * "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"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기준에 "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명,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" 추가

[신속추진 필요]

-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'21년까지 전 지자체에 조기 배치하는 방침에 따라 당초 9월까지 '21년 기준인력 산출을 완료할 계획
- ☞ 지자체 수요·업무량,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등을 고려하여 '21년 배치 기준 인력을 마련 중으로, 10월 내로 확정*
 - * 10월 중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및 통보 예정

[정상추진]

- (예방) 부모 교육·학대 예방교육 강화, 아동학대 처벌강화 TF 구성
 - (교육) 임신·출산을 맞이한 국민 대상 가족·부모교육 정보 안내(8월 약2만명)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·홍보 추진
 - * 임신·출산 진료비 청구 시 부모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고시 개정 완료(7월)
 - * '21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 콘텐츠 개발 추진(20.7.-), 대상(아동, 부모, 신고 의무자 등)별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(20.8.-)
 - (처벌강화 TF) 아동학대 처벌강화 방안 검토를 위해 특별 TF 구성(9월)

< 아동학대 처벌강화 TF 구성·운영 계획 >

- (구성원) 변호사, 법학·사회복지학 전문가, 아동권리옹호단체, 언론인, 경찰청·법무부·복지부·아동권리보장원 등 11인
- (역할) 아동학대범죄 관련 현행 양형기준 개선안 마련 및 제출
 - * 현행 양형기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세부과제 도출(~10월) → TF 위원 검토·12차 회의(~11월) → 양형기준안 작성 후 양형위원회 제출(~12월)

- (발굴) 신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, 온·오프라인 발굴 기반 확대
 - (신고자) 신고의무자 신고강화 개정안* 마련 관련 의견조회(8~9월) 교원·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매뉴얼에 익명 신고시스템** 안내 등 포함(7월~)
 - *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·징수 주제 명확화,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
 - ** 아동학대신고앱(아이지킴이 112, 현재 운영중) 활용 방안 등
 - (발굴기반) 영아 건강관리 가정 방문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의무 지침 마련·운영 중, 경찰이 가정 폭력 현장에서 아동 유무를 확인하는 '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' 개선·운영 중(9월~)
- (초기대응)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, 경찰-아보전의 동행 출동 범위를 응급 아동학대 신고 → 모든 학대신고(원칙)로 확대 협의완료·안내(8월)

< 참고 : 경찰 - 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>

- | | |
|--|--|
| <p>< 기존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응급 아동학대 신고에만 동행요청·출동 • △ 긴급치료 필요 △ 36개월 이하 아동 등 중대성·긴급성을 고려, 8가지 유형 | <p>< 개선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행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동행요청·출동(원칙) |
|--|--|

- (보호·지원) 학교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컨설팅 실시(8월~, 9개 시·도), 학교의 상담기능 강화 추진*
 - * 비대면 화상 상담시스템 개발 추진(8~11월), 고위기 학생 이해를 위한 전문상담교사, 전문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(20.7.-), 위프젝트 학생 상담자료 개발(9~12월)
- (사후관리)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내용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* 마련·배포(9월),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시범연구 운영 중
 - *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, 사례회의를 통한 지역 유관 기관의 의견 청취·서비스 연계 안내(업무매뉴얼 개정 완료, 9월)

[신속추진 필요]

- (점검체계 마련) 광역지자체 단위의 점검 체계 마련을 위해 “광역아동 보호전담기구 구성·운영 참고사항”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(8월~)

<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·운영 계획(안) >

- (구성원) 시도 아동보호담당국장(주관), 시도 경찰청(서), 시도 교육청, 아보전 등
- (목적 및 운영)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대책」 집행상황 점검 / 분기 1회 개최 원칙
- (점검사항)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 실적, 교육기관·경찰·아보전 업무추진 실적 등

- 현재 모든 시도(17개)에서 전담기구 구성·운영 계획 수립 완료(10.13.)
- ☞ 전 지자체에서 시군구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 현황을 포함하여 '20년 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 완료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조치 지자체 독려 예정
- * '시군구 정보연계 협의체 →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→ 중앙부처'로 현장에서의 대책 보완·개선 필요사항 등이 취합, 전달되어 제도·예산·법령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

2. 예산(안) 반영 현황

- ❖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'20년 추경 편성 및 '21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반영 추진
 - ※ '21년 예산안 편성 시 "12대 중점 협업과제"로 포함시켜 예산에 적극 반영

□ '20년 추경 주요 반영사항

-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(21억), 시군구 아동학대 상담 조사 시설 보강(24억) 등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기반 마련

< '20년 추경 주요 반영사항 >

-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(아보전에 심리치료도우미 등 지원, 21억원)
- 시군구 아동학대 상담 시설 보강(상담실 CCTV 및 녹음·녹화장비 구입, 24억원)
- 시군구 아동보호전문요원 조기배치(53개 미배치 시군구 인력충원 지원, 1억원)
-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 보강(시스템 노후장비 보강 지원 1억원)

□ '21년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

- (정보공유) 시스템 연계, 고도화 등 정보공유 기반 마련
 - 가정폭력 신고 정보·위기아동 시스템 자동연계(2.3억), e아동행복시스템 고도화(16억),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(84억, 신규)
 - * 재학대 예측모델 개발, 방문조사를 위한 모바일 전용 앱 도입 등 포함
- (인프라확충)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호시설 확충, 인건비 증액
 -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 10개소씩 확충하고,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단가 인상(단가 2.9% 인상)
 - ※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(221→266억),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(59→78억)
- (단계별 실효성) 예방 → 발굴 → 보호지원 → 재발방지 단계별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원 확대
 - (예방)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(0.3→2억), 취약·위기가족 부모교육 등 지원대상 확대(중위소득 72→100이하)

- 7 -

- (발굴) 영아 건강관리 방문 확대(20→50개소 수행), 가정밖 아동·청소년 발굴 확대 등 다양한 발굴수단 강화
- (보호지원) 상대적 지원이 열악했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 신설(1.3억), 심리치료 전담기관(아보전) 운영(17개소, 신규)
- (재발방지) 보호 아동·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확대(4→8개소)

<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(안)」 주요과제 예산 반영 현황 >

(단위 : 억원)					
과제명	20년	21년(안)	증감	증감율	주요내용
① 정보공유·연계					
APO업무관리 시스템 고도화	0.7	1.9	1.2	171%	•e아동행복시스템(복지부)과 연계
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고도화	2	16	14	706%	•APO시스템(경찰청)과의 연계(0.4억) •재학대 예측 모델 방문조사 강화 등
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	-	84	84	순증	•위기청소년 발굴과 통합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
② 인프라 확대					
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설치	221	266	45	20.6%	•기관 추가 확충(71→81개소) 인건비 상승(30,570→31,456천원)
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	59	78	19	31.2%	•추가 확충(76→86개소) 인건비 상승(27,577→28,377천원)
③ 단계별 실효성 제고					
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 콘텐츠 개발	0.3	2	1.7	567%	•공통콘텐츠 외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콘텐츠 추가 제작(5개)
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	-	1.3	1.3	순증	•70명, 월 30만원씩 지원
심리치료 전담인력 신규 배치	-	5.4	5.4	순증	•17개소에 전문인력 3명씩 배치 등

3. 입법 계획

- ❖ 총 9개 제·개정 법령 중 일부 법안 발의(2건) 및 고시 개정(1건,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)
- * (입법과제 추가) 주요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를 사망사건 분석전담 조직 등에 제공하는 근거 마련 (아동보호법 개정 추진)

□ 발의 완료 법안

- 개정안이 발의 완료된 법안*은 연내 입법 위해 국회와 협력
- * (사회보장급여법) e-아동시스템 상 위기가동정보를 학교와 공유근거 마련(8월) [아동복지법] 친권자 친권상실제한 청구사유 구체화 근거 마련(7월) 등

□ 발의 예정 법안

- 전문가 의견수렴,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, 빠른 시일 내 통과 가능하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 추진

법령고시명	과 제 명	달조 추진계획/시기
아동복지법	- 학대 부모 출소정보 지자체에 제공 - 유치원·어린이집에 학대피해아동 정보 공유 -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예외조항 개정 - 즉각분리제도 도입 - 학대행위자 취업제한 범위 확대 - 전문위탁가정제도 도입 -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강제성 부여	- 개정안 마련(~11월) - 국회 상정(~21.1)
이동학대방지법	-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징수 명확화 -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- 경찰·학대전담공무원 출입권한 강화	- 개정안 마련(2019) - 국회 협의(2011~) 및 개정법률안 정기국회 상정(~21.6)
민법	- 징계권 조항 개정	- 개정안 안건(18.9월 국무회의 통과(10.13)) - 국회 제출(10.16)
청소년복지지원법	- 드림스타트 관리종류대상 아동 중,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안전망 연계 강화	- 개정안 마련(~9월) - 국회 상정(~12월)
학교보건법	-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전문가 의견이 있는 근거 마련	-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상정(21)
학생생활기록법	- 학생 상담 지원체계, 상담기록·관리 등 규정	

⇒ 부처간 조속한 협의 및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가급적 연내 법령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발의 추진

Ⅲ. 보완·추가 과제

① 정서·방임 학대와 돌봄 거부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(인천 사건)

- (문제) 방임 아동의 경우, 신고가 이루어져도 신체적 학대와 달리 적극 개입이 쉽지 않아 돌봄 사각지대에 지속 노출될 우려
- 원가정 보호가 지속되어 분리하지 않더라도, 지역사회의 돌봄 기관 학교가 방임 아동·청소년을 돌볼 수 있도록 강제하는 **대안적 보호조치** 제도화 미흡

<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 (개요) >

- 보호자(모, 이혼가정)에 의한 방임학대 신고에 따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·드림스타트·학교 복지사 등 개입 (안전 모니터링, 물품지원, 양육법 상담 등, '18.9~)
-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공되는 학교·지역사회 돌봄 참여를 보호자가 거부하여, 드림스타트·학교 담당자는 부모 친권 우선에 따라 참여를 강제할 수 없었음
- 반복되는 학대신고(3차례)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(시설보호위탁)를 하였으나, 가정법원은 모의 양육의지 확인 후 부모·아이에 대한 상담위탁 조치(20.8)

○ (보완방안) 취약계층 아동 돌봄공백과 학대여부 집중점검 + 방임·정서학대 시 적극적인 개입 방안 강구

- (집중점검)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공백과 부모 정서학대·방임 등 학대발생 집중점검 (복지부 기 시행 중, 9.22~10.21)
※ 드림스타트 사례관리(취약계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) 가정 집중 모니터링 (약 7만 명)
- (적극개입) 방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방안 마련
 - ① 가정법원의 적극적 보호조치(예: 시설보호조치)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강화 TF를 통해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선방안 논의, 제안서 마련(~12월)
 - ②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,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이 돌봄 서비스 신청 대행 등 신청절차 적극지원(11월~)

- 아보전-드림스타트 사례개입 시 타 기관 서비스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**돌봄 서비스 등 연계**될 수 있도록 조치(업무수행지침 개정)
 - * 연계기관-대상자 직접 소통 조치, 개입 기관이 신청서 작성 후 연계기관에 전달 등
- 아보전-드림스타트 등에서 **취득한 개인정보를 돌봄 시설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용-제공 동의서 서식 개선**
- 보호자 등의 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, 아보전,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**돌봄 서비스 이용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돌봄시설 이용 신청 절차 개선**

③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**아동 방임으로 판단하여 초등돌봄교실 이용^{*} 요청시, 참여할 수 있도록** 단위 학교에 안내(10월)

* 현행 맞벌이, 저소득, 한부모 가정 등 중심

④ **부모 반대에도 돌봄서비스에 참여**하여 지역이 학대아동을 돌봐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추진(20.下~)

- **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'돌봄서비스 이용'도 내릴 수 있도록**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또는 법령 해석 가능성 검토 추진
- *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47조제1항제4호(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)를 넓게 해석하여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위탁도 포함
- 법원의 결정 외에도 필요한 경우 **시군구의 장이 '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'을 보호조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**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
- *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군구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 가능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(또는 아보전)이 **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서비스 이용**을 하도록 하였으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**과태료 부과**가 가능하도록 **아동복지법 개정 추진**

② **한부모가정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** 필요

- (문제) **한부모가정 아동·청소년**의 경우, 양육비 이행의무가 있는 부모가 **양육비**를 지급하지 않아도 **제제수단이 미흡**
 -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**아동·청소년이 양질의 돌봄·교육**을 받을 수 있는 **기회가 박탈**되어 건전한 성장에 저해

- 11 -

※ [참고]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

운전면허 정지	출국금지	형사처벌
미국, 영국, 캐나다, 한국	호주, 뉴질랜드	미국, 호주, 벨기에, 덴마크, 프랑스, 독일, 오스트리아, 스위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, 영국, 노르웨이, 캐나다, 뉴질랜드

* 한국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(20.6. 「양육비이행법」 개정)

- (보완방안) 아동·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**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제수단 강화**
 - 양육비를 장기·상습적으로 미지급할 경우, 명단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
 - ※ 「양육비이행법」 개정안 발의(20.6.25, 전주혜 의원, '20.7.15, 전재수 의원, '20.9.9, 윤영석의원, '20.9.10, 임이자의원, '20.9.29, 권인숙의원)

③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**적극적인 신고자 보호** 필요

- ① (문제) 아동학대를 **내부 신고**한 경우, 해당 시설의 아동학대 발생 사실에 따른 지도·감독 미흡으로 **불이익 행정처분**이 우려되어 신고 주저

- (예시) 보육시설 원장이 해당 보육기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후,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불이익 행정처분 우려(어린이집평가인증 취소 등)
- (현행) 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(예: 복지부)에게 처분을 감경·면제하는 '책임 감면'을 요해야만 감면이 가능하고, 처분청 자체 감면 불가

- (보완방안) 처분청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자체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**'책임감면' 제도 확대**

※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권익위 요구 없이도 처분청이 책임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중

- ② (문제) **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로** 보호 대상^{*}이나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상 신고 방법^{**}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보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*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아동학대(처벌법11월 시행예정) 및 아동복지법 포함
 **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신고

- (보완방안) 신고 당시 신고자 **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**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**신고자가 본인**을 밝히는 경우 등 적극 보호

* (예시) 경찰·지자체 수사·조사 과정의 진술내용 등으로 신고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, 경찰·지자체에 신고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

- 12 -

- ㉓ (문제)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피신고자에 의한 무고·명예훼손 고소에 연루 시 변호사 비용을 사비로 지불하는 등 부담 존재
- (보완방안) 피신고자의 무고·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
- ※ (기존) 원상회복 관련 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→ (확대)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정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(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 중)

Ⅳ. 추진 일정

- ❖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점검체계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상황 점검·보완 추진
- ※ 각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현장에서의 정책 제안·개선 필요 사항 등을 중앙 점검기구(아동정책조정위원회)에 전달하여 제도·법령 등 정책에 반영

□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현장 대책 집행상황 점검('20. 4분기~)

□ 아동정책실무위원회*를 통한 대책 추진상황 점검('21~)

* 아동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조정 및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'아동정책조정 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' 산하에 설치(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)

※ 점검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사회관계장관회의(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사회 관계장관회의 등)에 보고